



농림축산식품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전남 무안 가금 사육농가 고병원성 AI(H5N8형) 확진에 따른 방역조치 알림

1. 관련: 농림축산검역본부 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-544('21.1.13.)호,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-508('21.1.8.)호
2. 우리 부는 전남 무안 육용오리 사육농장의 고병원성 AI 의사환축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, 고병원성 AI(H5N8형)로 확진되어 지자체, 관련 부처 및 관련 기관 등의 방역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가.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(AI SOP)에 따른 방역조치

□ 발생/양성 확인 시·도

- 의사환축 발생에 따라 기 설정된 방역지역 별 살처분, 이동제한 등은 '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' 및 '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(SOP)'에 따라 조치
 - 발생농장 및 보호지역(반경 3km 이내)의 사육 가금 및 감수성 동물과 그 생산물에 대해 원칙적으로 살처분·폐기 조치
 - 살처분은 최대한 신속하게 실시하되 분변·먼지 등이 외부로 비산되지 않도록 하며, 야생조수류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의 선시행 후 실시
 - 추가 방역조치에 따른 필요한 인력(경찰, 군인 등)에 대하여는 관련 부처에 적극 요청
- 발생 시·군 주요 도로에 이동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을 반드시 설치·운영
- 가금농장 및 가금관련 작업장*에 대한 매일 임상예찰 및 일제 소독 철저
 - * 종축장, 가금류 도축장, 사료공장, 전통시장, 부화장, 식용란수집판매업, 비료제조업, 가축분뇨처리장 등

□ 이외 시·도

- 발생 시·군의 인접 시·군은 주요 도로변에 이동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을 반드시 설치·운영
- 발생 시·도 및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역학관련 대상을 통보 받은 경우 관련 시설에 대한 이동제한조치 등 긴급방역조치 시행
- 축산농장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대해 매일 임상예찰 및 일제소독

- 전국 가금 사육농가 모임·행사 금지

□ 유관부처 협조사항

- (국방부) 지자체 요청 시 살처분·매몰·사후처리 지원 병력 및 제독차량 지원
- (문화체육관광부, 한국관광공사) 철새도래지 방문 관광 자제 대국민 홍보
- (경찰청) 「가축질병 위기대응 매뉴얼」에 따라 이동통제 등 차단방역 관련 지자체 협조 요청 시 적극 지원
- (질병관리청) 고위험군 차단방역 종사자(살처분, 매몰 등)에 대한 문진을 통해 질환 의심자 등은 살처분 참여를 배제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, 살처분 참여자 등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보급 지원

□ 농림축산검역본부

- 방역조치 대상 축산차량, 가금 사육농장 및 축산 시설 등을 확정하고 각 대상별 이동제한 기간을 명시하여 우리 부에 즉시 보고 및 해당 지자체 통보
 - * 지자체는 관련 고시에 따른 역학 관련 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및 역학 관련 가금 사육농가와 사료공장에 대한 검사 이행 철저
- 역학조사 결과 및 KAHIS 축산차량 출입정보 등을 활용해 '빅데이터 기반 AI 확산위험도 분석'을 실시하고, 지자체가 선제적 방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제공
- 발생농장은 환경시료*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, 우리 부에 결과 보고
 - * (농장) 동물약품 보관용 냉장고, 난좌, 축주 신발, 퇴비사 등, (차량) 차량 바퀴, 운전석 매트 등

□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

- 고병원성 AI 발생 지자체, 방역대 내 농가 및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전화예찰을 매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매일 14시까지 우리 부에 보고

□ 관련 단체(협회)

- 회원, 소속 계열사 농가 등을 대상으로 매일 임상예찰을 실시하고 고병원성 AI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가축방역기관에 신속하게 신고(1588-4060, 9060)토록 전파
- 축산관련차량에 대해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확인 후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에 출입을 허용하도록 SMS(문자메시지) 발송, SNS 게재, 공문 시달 등 홍보 철저

□ 관할 및 소속 모든 농가에 대한 문자 발송 홍보(전국 지자체, 가금관련 협회)

- 현재 상황 전파, 검사결과 및 발생상황 등 단계별 문자를 발송하여 가금농장 내·외부 및 종사자에 대한 개인소독, 의심축에 대한 조기신고, 외국인 근로자 등의 모임 금지 등 '농장단위 차단방역 철저' 홍보 실시

나. 특별방역강화 조치(적용기간: 별도 조치 시까지)

□ 해당 방역대 내 사전 예방 방역 조치 추진

- (농가 예방강화) 진입로·축사 둘레 생석회 벨트 구축, 축사 입구 2중 소독조 설치(세척조+소독조), 산성 소독제 및 소독제 혼합 사용 금지, 외부인의 농장 방문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, 부득이한 경우 개인 소독 및 방역복 환복 후 출입
- (출입제한) 가금의 입식·출하는 AI SOP에 따라 가축방역관이 통제, 검사를 실시하고,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허용
- (알 수집) 알(식용란·종란) 운반차량은 1일 1농가에 한해 수집할 수 있으며, 부득이한 경우 농장 밖 환적을 통해 수집(농가 내 차량진입 금지)
 - * 농장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경유가 필수이며, 농장 진입 시 재차 소독 실시하고,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받은 소독필증을 농장 종사자에게 제시
- 해당 지역 내 거점소독시설은 산성 소독제 사용 배제
- 방역지역 가금 사육농장 내의 사료·왕겨는 농장 밖 반출 금지

□ 전국 모든 가금 사육농장 출하 등 가금의 이동 시 출하 전 검사

- 검사 후 이상이 없는 경우 가금 이동승인서 발급 후 가금 출하(이동)
 - 단, 농장과 별도로 떨어져 있는 부화장에서 반출되는 초생추는 제외
 - * 가금의 검사 방법은 "AI 상시 예찰·검사 계획"에 따름

□ 발생 시·군 소재 가금(산란계·종계) 사육농장 AI 검사 강화

- 기간/주기: 해당 방역대 해제 시까지 / 격주 1회 검사
- 대상: 발생 시·군 관내 산란계·종계 농가
- 검사 추진 현황은 [붙임 2]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일 14시까지 우리 부 AI상황실*에 제출
 - * AI 상황실 온나라 메일(aitkdghkdtlf@mail.go.kr)

□ 발생 시·군의 모든 가금 사육농장 7일간 이동제한

- 기간: '21.1.13. ~ '21.1.19.
- 대상: 발생지역(전남 무안군) 내 사육 가금 및 가금 사육농장 종사자
- 방법: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명령서 발부
- 이동제한 내역
 - 해당 시·군 소재 가금 사육농가에서 또는 사육농가로 가금류, 알(식용란, 종란 등), 분뇨, 사료, 동물용의약품, 왕겨, 톱밥, 축산기자재 등의 반입·반출 금지
 - 해당 시·군 소재 가금 사육농가로 수의사, 외부 백신접종 인력, 인공수정사, 알 수집상, 컨설팅 인력, 가금거래상인, 축산기자재 보수인력 등 출입 금지
- 다만, 다음의 예외 적용 가능 사항 중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가축방역관 사전

승인 및 감독 하 반출·입 허용

- 도축장 출하 가금(본 조치 이전 도축 출하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), 사료 반입
- 식용란 및 종란 반출(주 2회로 반출 제한)
- 초생추 입식(본 조치 이전 입식이 사전 계획되어 있는 경우)

□ 발생지역(시·군) 전통시장(가금판매소 등) 운영 중단

- 전통시장별 전담공무원은 해당 지역에 설정된 방역대 해제 시까지 운영 중단함을 해당 시장 내 가금판매소 등*에 통보하고, 이행 여부를 주 1회 이상 점검
 - * 차량 이동식 가금 판매 형태의 영업 포함
- 검역본부는 해당 지역 가금판매소 운영 중단 여부에 대해 현장 점검 추진 후 결과 보고
 - * 5일장 형태의 경우 시장이 열리는 날짜에 맞춰 현장 점검 추진

□ 해당 계열화사업자(다솔)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

- 동일 계열 소속 도축장 AI 검사 강화(시료채취일로부터 14일간)
 - (현행) 닭 10%, 오리 30% → (강화) 닭 20%, 오리 60%
- 동일 계열 위탁 사육농가 가금 일제검사
 - 기간: '21.1.14.(목) ~ '21.1.27.(수), 2주간
 - 방법: (닭 등) AI 간이진단검사키트, (오리) 정밀검사(PCR)
 - 관내 동일 계열 위탁 사육농가가 소재하는 지자체는 [붙임 3] 양식에 따라 검사 추진 현황을 기재하여 매일 14시까지 우리 부 AI 상황실로 제출

- 붙임 1. 농림축산검역본부 관련 공문 1부
2. 산란계·종계 사육농장 AI 검사 실적 작성 양식 1부
3. 계열화사업자 일제검사 실적 취합 양식 1부(별송). 끝.

